

## 2008년도 정기세미나 토론내용 요약

권혁남 전북중재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인터넷에서의 정보 생산 및 유통 구조의 변화와 법적 쟁점>와 <언론판례상 면책법리 현황과 과제>라는 두 가지 주제 발표 내용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언론인들은 언론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취재활동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언론의 활동 공간이 조금 더 넓어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판사들은 법원은 사건이 접수되면 언론보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두 가지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법원의 판례는 언론의 자유를 확대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날 토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주제 토론

**권혁남(사회자, 전북중재부 중재위원) :** 이재진 교수의 발제 내용은 크게 3가지로 포털을 저널리즘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 묵은 기사의 삭제 문제, 인터넷 반론권에 대한 것이다. 참석자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 기탄없는 의견을 개진해 주길 기대한다.

**유영현(세계일보 온라인뉴스부 부장) :** 온라인 신문의 고민은 묵은 기사 처리에 관한 것이다. 올해는 선거가 있어서 정치인들이 묵은 기사를 삭제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했다. 심지어 음주나 절도 관련 기사 등도 삭제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민이다.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모든 상황이 그 기준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고, 내부 기준이다 보니 이에 따른 처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도 모르겠다. 혹시 묵은 기사 삭제 요청에 대한 거부와 관련된 판례가 있는지 알고 싶다. 또 만약 관련 기사 DB를 삭제한다고 해도 블로그나 카페에 남아 있는 기사들이 있다. 즉 생산자가 DB에서 기사를 삭제해도 2차 생산자나 가공자의 것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하다. 그래서 관련 가이드 라인이 있었으면 한다. 신문은 역사의 기록인데 항상 좋은

것만 기록할 수는 없다. 결국 반론권을 모두 받아주어 기사 삭제를 하다보면 우리 사회에는 굉장히 좋은 기사만 남을 것이다. 이처럼 좋은 기사만 남기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 묻고 싶다.

**여운성(EBS 법무팀) :** 묵은 기사와 관련해서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오늘 논의는 역기능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 언론사의 모든 기사들은 시간이 지나면 묵은 기사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 공과 사를 구분해서 공적인 범위의 기사는 삭제를 거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고 사적인 범위의 기사는 삭제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법원 재판부가 판례를 축적하기도 하겠지만 공인의 경우에는 모든 행동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선거 때가 되어 자신과 관련된 묵은 기사를 삭제해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다. 언론사는 묵은 기사의 삭제와 관련해 스스로 공사와 경중을 가리는 기준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정상규(수원지법 판사) :** 묵은 기사의 삭제요청과 관련해서 말씀이 많은 것 같다. 법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인격권은 물권적 청구권의 일종이므로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삭제 요청은 법이론적으로 가능하다. 기사 삭제에 관한 판결은 아직 없었으

나 안티 사이트 관련 사건에서는 폐쇄까지도 허용된 판례가 있다. 결국 폐쇄청구, 삭제청구가 가능하냐고 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이익형량의 문제다. 해당 기사가 어느 정도 해를 끼치느냐, 아니면 유용한 측면이 있느냐를 따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만 기사의 극히 일부분만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다를 것 같다.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원고들이 많지만 재판부에서는 책임을 인정할 때도 명예훼손 정도에 따라 정정보도를 허용하고 있다. 이익균형을 맞춰 손해배상만 판결하기도 한다. 삭제 요청을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지를 기준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블로그 등 2차 게재의 문제도 원고가 지적을 했을 때 피고가 그것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피고가 알아서 발견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원고가 권한이 있는 자를 정해서 그를 상대로 청구한다면 이론적으로 삭제청구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김시철(대법원 재판연구관)** :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논의 이전에 정리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미국의 공인과 관련된 판례는 특별법에 의해 움직이고 있어 일반화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발제자가 인용한 판례와 유사한 내용에 대해 미국과 영국이 상이한 결과를 내놓기도 한다. 일반 원칙에서 봤을 때, 미국의 인격권 침해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가 언론사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ISP가 발언자(Speaker) 혹은 발행자(Publisher)에 해당하느냐 또는 인지하고 있는 배포자(Distributor)에 해당하느냐가 중요하다. 일반 통신업자(Common Carrier)가 아니라면 책임이 인정된다. 결국 이와 관련한 문제는 입법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 미국, 일본, 독일의 각국 법을 보면 국가별로 입장이 상이하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미국의 것이 일반원칙

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나름의 여건에 맞춰 일반원칙 내지 특별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독립형 인터넷 신문의 경우에는 Speaker의 입장이고, 기사를 수정할 경우에는 Publisher의 입장이 된다. 법률관계를 적용할 경우는 작위나 부작위냐에 따라 소멸시효 진행 시점에도 차이가 있다. 책임의 근거가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이 부분이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미국의 경우 업로드할 때 작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안다. 그 이후에는 일반 종이신문과 똑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그것이 우리사회에 맞느냐 아니냐는 일반 법리를 검토한 후 특별법 제정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같은 부분의 정리가 되지 않으면 법리적 일관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예시한 '변심에인사건' 같은 경우도 작위와 부작위 책임을 구별하고 있다. 그런 부분도 세심한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윤종배(KBS 시청자서비스팀 차장)** : 시청자 상담실 책임을 맡고 있는데 시청자들이 초상권, 명예훼손 등에 관한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있다. 1년에 약 50만 건의 상담을 하는데 이 중에 제작파트나 방송 원로분들이 알아야 할 사례 1만 7천여 건을 모아 종합보고서를 만들었다. 시청자 의견에 대한 제작진의 답변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초상권에 관한 문제, 묵은 기사에 대한 삭제 요청 관련 사례가 많다.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KBS의 경우에는 시청자 수신료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청자 중심으로 처리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문제가 발생할 때 시청자 입장에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상담실에 접수된 사건은 대부분 법적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고 사전에 해결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의 단초는 시청자, 독자의 입장을 얼마나 이해하고 조정하느냐에 있다. 이 교수님은 앞으로 어떻게 규정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인가,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

인가를 발표하셨는데 법적 해결 이전에 언론사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풍부한 사례를 추적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언론사 사례 연구를 통해 어떻게 인터넷 매체 관련 분쟁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접근하면 생산자와 수용자 양쪽을 모두를 만족시키는 방안이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

**안용균(NHN 정책실 차장) :** 포털의 뉴스 서비스가 언론이나 아니냐의 문제는 포털 사업자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포털은 언론이 아닌 새로운 미디어라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다. 언론성 여부의 문제보다 포털 서비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언론중재위원회나 국회에서 논의된 것처럼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언론중재법에 포함시키는 것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며칠 전 증권 투신사를 운영하던 사장님의 자살 기사가 있었는데, 관련 기사에 고인이 모교에 기부금을 전달하는 사진이 함께 게재되었다. 해당 학교에서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지만 자신들과 직접 연관이 없고, 학교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조치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다. 포털에서는 기사에 먼저 손을 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기사 삭제, 변경, 수정 권한은 해당 언론사에 있다고 이해를 시켰다. 포털의 전파성 때문에 피해확산의 우려가 크다면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언론중재위원회 등에서 게시금지 결정 등을 해주면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이고 포털 입장에서도 서비스 운영과 관련해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권혁남 :** 발제자도 포털을 저널리즘으로 봐야 하느냐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포털에서 제목을 변형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실제 사실인가.

**안용균 :** 조선일보에서 네이버가 기사 제목을 바꾼다고 보도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하기도 했다. 언론사와 계약을 할 때 제목을 바꾸지 않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기사 제목을 변경한 사실이 없다

는 증빙자료를 제출해 정정보도성 반론보도가 나간 바 있다. 90년대 중후반 포털의 언론성에 대한 논의가 없었을 무렵에는 간혹 그런 일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이후부터는 기본적으로 제목 변경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김정섭(경향신문 미디어팀) :** 촛불시위를 계기로 인터넷상 표현 문제가 불거져서 규제를 강화하려는 추세이다. 그런데 어떤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포털을 언론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의 논쟁이 시작되었다. 또 현재 미디어 기술 발달 상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문제를 포털에 국한해 볼 것이 아니다. 이미 IPTV까지 출범한 상황이다. 포털을 언론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공익적 기능이 앞서는가, 상업적 기능이 앞서는가 하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세부 기준을 세워서 공익성과 상업성을 따지면 사업자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운영할 것인지, 상업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의지를 표명할 수 있고, 구제 관련해서도 그에 맞는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 자리에서 포털이 언론이냐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기술의 속도를 법제나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 속도를 너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문제다. 이 시점에서는 진전된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는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 우선 언론과 보도의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면책범위가 더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공인의 개념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기존의 판례를 보면 배포, 편집, 취재행위 및 논평 기능까지를 보통 언론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점과 관련해 과거에는 신문과 포털과 관련한 논쟁만 있었지만 현재는 방송도 논란이 되고 있다. 방송법 규정에 의하면 뉴스란 정치, 경제, 사회를 포괄한 영역을 다루면서 논평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것을 기초로 보면 뉴스 채널이 아닌 기타 일반 드라마, 연예정보, 경제정보, 문화정보 등의 채

널이 경제, 사건, 연예, 문화정보를 스크롤 뉴스로 만들어 보도하는 것은 뉴스에 속하는지 아닌지 구분하기 힘들다. 실체는 그와 같은 채널들이 보도채널이 아님에도 뉴스를 보도하고 있고, 연예인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과 보도의 명확한 개념정립이 필요하다.

IPTV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 방송, 전자상거래도 가능하게 한다. 또 포털과 마찬가지로 뉴스를 유통하기도 한다. 이미 KT 상품의 경우는 신문보기 서비스 제공에 이어 포털이 하나의 채널로 들어가 있다. 네이버 등 포털의 문제가 IPTV까지 확산된 것이다.

또 한미, EU FTA 규정을 보면 저작권과 관련하여 IPTV 등 쌍방향 멀티미디어 방송으로 유통되는 콘텐츠는 일시적 저작이나 복제를 해도 저작권 침해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양국 간에 합의되어 있다. 이는 신문, 방송, 포털 등을 통해 보도된 뉴스를 다시 유통시키는 것이 양성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콘텐츠 도입 비용이 들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오늘 논의의 장을 기점으로 언론 및 멀티미디어 개방시대를 위한 언론법제 정비 위원회를 만들고 위원회 내에 각 분과를 설치해 논쟁을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우리의 규범을 만들어가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동근(광주중재부 중재위원) :** 발제자는 포털이 언론이냐 아니냐의 문제에 대해 언론학자들은 대체로 언론으로 보고 있다고 하면서도, 포털이 언론사의 기사를 올렸을 뿐이기 때문에 취재 기자와 다른 입장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포털이 언론인지의 여부는 사건 자체 내용을 취재자가 변형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과거 취재보도 방식을 새로운 뉴미디어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건 현장에서 기자

가 직접 취재하는 것도 취재보도이지만 기존 언론의 수많은 기사들 중에서 일부만을 선별하여 보도하는 네이버 등 포털의 행위도 결국 편집행위(Journalistic Decision)이다. 발로 뛰는 취재보도뿐만 아니라 상품화된 기사 중 일부를 자사의 편집방침에 따라 선별해 사이트에 올리는 것도 저널리즘이라 생각한다.

**민성철(대구서부지법 판사) :** 포털의 언론성에 대한 논의는 어떤 목적 하에서 논의를 하느냐가 중요하다. 지금 논의는 인격권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를 살피는 것으로 기타 신문 규제 등 언론사로서 규제에 대한 논의와는 별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목은 기사 삭제 요청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어떤 기사에 대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허위의 보도로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기사만 삭제요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기사 삭제요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10년의 소멸 시효가 있는 것과 같이 보도의 시점에서 10년이 지나면 일괄적으로 삭제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정상규 :** 언론을 바라볼 때 국가와 언론기관이라는 헌법적 측면의 논의가 있을 수 있고, 불법행위적 측면에서 개인의 명예 회복에 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우선 포털과 관련해서 통신품위법(CDA, Communications Decency Act)에 관해 좀 더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과거 영미법상 언론을 규율하는 기준으로 세 가지 분류가 있다. 발행자(Publisher), 배포자(Distributor), 일반 통신업자(Common Carrier)가 그것이다. 여기에 따르면 발행자는 유책, 배포자의 경우 알고 있었으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유책, 일반 통신업자의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고 봤다. 미국에서 문제가 된 사건 중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에 면책을 한 사건과 책임을 물었던 사건이 모두 있는데 유

책을 인정한 경우는 ISP가 편집권을 행사했느냐를 따졌다.

CDA법이 만들어진 후 미국 법원은 관련 사건에서 ISP는 Speaker나 Publisher로서의 책임을 안 진다고 했다. 그러면 Distributor로서의 책임은 따져봐야 하는데 연방법원은 ISP가 Distributor로서도 책임을 안 진다고 결정했다. ISP가 인터넷에 올리는 콘텐츠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전재계약을 통해 실리는 뉴스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게시판을 통해 일반 개인들이 올리는 콘텐츠가 있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전재계약을 통한 뉴스를 논의했는데, 일반 개인들이 게시판에 올린 내용에 대한 판결이 2~3년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다. 여기서 법원은 게시판을 통해 일반 개인이 올린 내용에 대해서도 ISP가 책임을 안 진다고 판결했다. 미국은 결국 CDA를 통해 ISP에 일부면책을 만들어 놓았고, 법원을 통해 완전면책의 길로 간 것이다.

과거의 영미법 논리, 보통법·판례법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영국, 독일은 앞서 얘기한 언론을 규율하는 세 가지 분류와 비슷한 논리를 다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완전 면책이라는 다른 논리 전개를 했나 생각해 볼 수 있다. 문헌을 접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명예훼손과 관련한 독특한 구조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미국은 언론의 책임을 공인이론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가장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을 갖고 있다. 따라서 면책의 범위는 넓지만 한 번 잘못하면 엄청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결국 포털이 책임의 주체가 됐을 때 해당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 피고가 됐던 회사들은 아메리카온라인(AOL), 프로디지(Prodigy) 등 강력한 ISP들이다. 이들이 만약 징벌적 손해배상을 맞게 된다면 산업 자체가 몰락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인터넷 강국인데 전 세계적 산업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해 면책의 범위를 넓게 보지 않

나 추측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포털에 책임을 지운다고 해서 경영상의 제약을 가져올 정도로 큰 손해배상을 물릴 것이냐 하는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전 재관계에 의한 것이라면 둘 사이의 내부 계약관계에 의해 포털만 책임을 지지도 않을 것이다. 언론사가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본다. 구상관계를 따져 법원의 판단을 통해 책임 비율이 정해질 것이다.

**김시철** : 포털이 Speaker인 경우에는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언론사와 계약에 의한 것일 때는 해당 언론사가 책임이 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댓글의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게시판 운영자와 댓글을 올린 사람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 성립이 검증되지 않기 때문이다. 저작권법과도 문제가 연결되어 있어 명예훼손 책임이 없다고 해서 저작권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기사삭제의 경우에도 명예훼손뿐 아니라 기사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재진(발제자, 한양대 교수)** : 언론사의 대처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그런 연구를 체계적으로 해준다면 법적 소송 이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이 크지 않나 생각한다.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 이전에 언론사가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CDA 230조에 보면 ISP의 면책과 관련된 선한 사마리아인(Good Samaritan) 조항이 있다. 그러나 ISP가 Distributor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는냐의 문제에 있어 기존의 완전 면책을 뒤집는 판결이 나왔다. Distributor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댓글 문화는 우리나라 고유의 특징적인 문화다. 최근 미국에서도 Speaker의 역할을 하진 않지만, 네티즌들이 어떠한

정보를 만들도록 유인했다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례도 나오고 있다. 예컨대 댓글을 통해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면, 댓글을 달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든 것에도 책임을 묻는 판례가 나오기도 했다. 관련된 판결 전체 47건 중 7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 면책보다는 일부 책임을 인정하는 정도로 미국의 판례경향이 자리잡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미국의 통신기사 인용 면책 주장(Wire Service Defence)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언론사는 아니지만 언론행위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자고 한다면 기존의 언론사와 동일한 면책을 적용해 줘야 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우리도 이러한 조항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도 사실 대법원 판결이 없어 헌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주마다 다르다. 일본은 최고 재판소에서 인정하지 않고, 우리 법원도 인정하지 않는다.

언론이나 아니냐를 따지기 보다는 언론에 의한 피해를 적절히 구제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실익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포털에 언론사 출신이 많은데 이와 연관되어 의제설정 기능도 자연스레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보도의 선택 행위를 저널리즘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에는 일부 공감하면서도 누구나 중요한 뉴스라고 판단할 만한 기사를 포털들도 앞서 배치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인터넷 전문 중재부를 두어 관련 사건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했으면 한다. 언론관계법이 개정이 될 예정이고 포털도 뉴스서비스사업자로 포섭이 되어 언론사로 규정되진 않더라도 언론행위에 대해서는 피해구제방법이 마련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런 부분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전담부를 두어 해결하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

## 제2주제 토론

**권혁남** : 기사라는 것은 사실(fact)과 의견(opinion)의 결합이다. 저널리즘의 변화를 살펴보면 50~60년대는 객관적 저널리즘이 지배적인 시기였다. 사실 중심으로 가다보니 언론의 무책임성이 강조됐고 그것이 비판받았다. 그래서 70년대부터는 탐사적 저널리즘, 80년대부터는 해석적 저널리즘으로 변화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사실보다 기사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주제를 잡고, 관련 자료 확보에 노력한다. 해석적 저널리즘이 자리를 잡은 이후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모두 송사문제가 계속 커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논의된 범죄보도, 경제보도, 종교보도 등 5가지 면에서 면책범위에 관한 논쟁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성일(중도일보 사회단체팀 팀장)** : 소개된 판례사건을 보니 대전 사건이다. 우리 신문도 관련 있고, 오랫동안 파장을 가져왔었다. 종교기사를 쓰다보면 조심스러운 점이 많다. 대전 MBC의 시사PLUS에서 신천지 사건을 다뤘다. 예고 방송이 나가고 신천지 교도의 위협이 있었다. 경찰의 호위를 받아야 하는 상황도 있었고, 방송 후에는 신천지 사람들이 계속 전화로 협박하고 서버를 다운시키기도 했다. PD가 2편을 준비하다 포기했다. 방송을 진행하던 변호사는 얼굴이 알려져 협박을 많이 당했다. 종교보도와 관련해 언론의 자유부분을 많이 고려해 줬으면 한다.

**오풍연(서울신문 법조대기자)** : 언론기관의 범죄보도와 관련해서 판결중심의 보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러다 보면 다른 언론사에 뒤지게 된다. 예를 들면 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당시 중앙일보에서 2단으로 내보냈다. 그 보도가 안 나갔다면 진실이 밝혀졌을까. 판례중심으로 갔다면 검찰이 기소를 하고 법원에서 판결을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그 밖의 사건에서도 언론의 보도가 아니면 문헌 사건이 많다. 언론의 속보성도 관대하게 인정을 해 줬으면 한다.

**김정섭** : 언론사에서 기피하는 영역이 실존한다. 사이버 종교 단체, 특정한 장애인 단체, 최근 북파공작원 등이 기피하는 대상이다. 이성적인 소구로 설득이 안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도의 실익보다 외적인 갈등이 더 심해서 그렇다. 그렇다고 성역으로 돌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 소통할 수 있는 설득의 묘미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보도 원칙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발제와 관련해서 공인의 개념을 어디까지 확대해서 봐야 하는 것인가 의문이 있다. 공인은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보도에 대해 면책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과거에는 공인이 공직자에 가까웠지만, 현재는 다양한 직종이 생기고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공인의 범주도 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판결을 할 때 법리에서도 공인의 범위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듣고 싶다.

**김명현(경남신문 사회부 부장)** : 법조출입 시 변호사 법조비리 기사를 썼다. 변호사를 A라 하고, 브로커를 고용해 영업을 했다고 폭로한 사무장은 B로 익명 처리하여 소송에 걸리지 않도록 신중하게 했다. 그러나 결국은 소송을 당했다. 1심은 무죄였으나 항소심에서는 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현재는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변호사 관련 기사도 쓰기 싫어 한다.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는 공인이 아닌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봤다.

**권혁남** : 경제보도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삼양 우지라면 보도 사건도 과장보도가 문제되어서 회사가 망했다. 불량만두 사건으로 그 당시에 자살한 사람도 있다.

**조원철(서울제6중재부 중재부장, 서울중앙지법 부장 판사)** : 보도 추세가 사실보도에서 논평위주로 가고

있다. 뉴스 소비자는 객관적 사실을 알고 싶어 한다. 그러나 보도 추세와 함께 매체 간 경쟁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논평하는 사람이 구미에 맞는 사실을 구성해서 보도를 하기도 한다. 그래서 논평의 정확성을 판단하기 쉽지 않다. 보도하기 전에 반론기회를 주는 것을 취재활동의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기회를 주지 않고 보도를 하는 경우도 많다. 보도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 볼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기존 법리에 의해서는 면책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된다. 반론 기회를 주지 않고 보도한 경우, 논평위주 보도의 추세에 비춰 보면 그 자체로서 위법성 근거로 봐야 하지 않나, 손해배상책임의 인정근거로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

**김용옥(광주중재부 중재위원)** : 광주중재부에는 지역의 군 단위 신문의 보도 내용으로 인한 사건이 많이 들어온다. 내용을 살펴보면 기자 소양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기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한다. 일간지는 교육이 있는 것으로 안다. 사실상 교육이 필요한 것은 군 단위의 신문들이다. 대책을 세워야 한다.

**박기쁨(서울중앙지법 판사)** : 범죄보도의 경우 일본은 판결이 나온 이후 이를 위주로 보도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우리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언론사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또 범죄사건에 대해 보도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사건 자체만으로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는 없다. 밀착취재 과정에서 보도가 과장되면서 문제가 된다. 경제보도의 경우 기업 소송이 들어오면 재산적 피해 액수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지 고민스럽다.

**임재업(충청일보 편집국장)** : 일선에서 경영하고 제작하다보면 피의사실 공표죄는 문제 제기를 하면 다 걸린다. 언론사의 관행을 완전히 무시하고 법률적 시각으로만 보면 쓸 기사가 전혀 없다.

**이재진** : 미국에도 기업과 관련된 보도가 문제가 된 경우가 많다. 기업을 공적 존재로 봐서 공적 존재에 적용되는 현실적 악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으나 실제적으로 미국은 기업을 공인으로 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두 가지 원칙이 있다. 하나는 정부 관할 기업, 그 다음은 기업 보도 내용이 대단히 공익적일 경우는 기업을 공인으로 봐야한다는 원칙이다. 면책 범위를 좁게 한다면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 공기업과 일반 기업은 달리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잘못된 기업보도가 피해를 낳기도 하지만, 면책 범위를 좁게 한다면 꼭 있어야 할 보도도 힘들게 되는 측면을 고려해 기업도 구분을 해서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시철** : 원칙에서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공인이론은 미국에서 나온 이론이다. 처음 출발은 공직자(Public Officer)이다. 여기서 공적 인물(Public Figure)로 확대해 나간다. 공직자에 하급 공무원은 들어가지 않는다. 공인은 국가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을 의미한다. 그 연장에서 공인은 유추적용이 된다. 당연히 유명인은 셀러브리티(Celebrity)라서 공인에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는 공직자가 아니라 공인에서 출발해서 개념이 흔들린다. 공기업은 기본적으로 국가권력이 아닌데 국가권력에 준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공인에 포함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앞에 단계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 확대된 개념에서 시작하면 이론 정립이 안 된다.

또 피의사실 보도가 자주 문제가 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하나의 보도 관행과 연관이 있다. 언론이 범죄보도를 할 때 '어떠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라고 쓰지 않는다. 보도가 강하게 나간다. 그러다 보니 단정적으로 표현이 돼서 문제가 된다.

**임경록(서울제6중재부 중재위원)** : 언론이 사회의 큰 권력이긴 하다. 그러나 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권력이다. 최근에는 공적인 인물이 아니라 일반 범죄자도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한다. 언론중재위원회, 법원이 언론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줘야 한다.

**김시철** : 문제가 생기면 원칙에 따라 영역을 따져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만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다. 법원은 사건을 만드는 법이 없다. 누가 제기했을 때 대응하는 것이다.

**권혁남** : 언론계 현실에서 보면, 마감이 압박해 검증되지 않은 기사를 내보내 생기는 부작용이 많다. 확인되지 않은 기사가 나가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정상규** : 오늘 소개된 판례들은 거의 공인이 아니거나, 공적 영역과 상관없는 것이다. 대부분 사인과 관련된 것이다. 공인은 보도와 관련해 거의 문제가 없다. 익명성 관련해서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확인만 거치면 된다.

**김용옥** : 언론사의 충분한 조사 의무가 요구된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기자가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기자는 수사권이 없다. 국선변호사에게 확인해도 정확하게 말해 줄 것인지 의문스럽다. 변호사는 수임사건에 대해 사실을 따지기보다 자신이 맡은 사건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신뢰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정상규** : 국선변호인에게 확인을 한다고 해서 진실을 알 수는 없겠지만 언론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이다. 그럴 경우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진다. 피의사실 공표와 언론사의 책임은 다르다. 피의사실 공표는 수사기관에서 책임을 지는 일이고, 언론기관은 상당성 범리로 가는 것이다.

**민성철** : 언론사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언론사의 영향력은 대단하다. 편집권을 가지고 의제를 설정하고 독자의 의견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어떤 범죄보도를 할 때, 언론보도의 자유가 있지만 그로 인한 명예

훼손으로 상대가 입을 수 있는 피해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또 대법원에서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언론사가 100% 사실 확인할 수 없으므로 상당성의 논리로 면책 범위를 인정하려는 것이다.

**유영현** : 경제보도 영역은 기획기사가 많다. 이런 기사는 많은 검증을 거친다. 그런데 일부 결과만 가지고 전체를 판단한다면 경제 영역은 보도를 하지 못할 것이다. 소송을 할 경우 소송액도 매우 크다. 확인을 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경제적인 영역은 성역으로 남게 될 것이다.

**한호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기자들이 사명을 가지고 공익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느끼고 있다. 기자는 진실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 같다. 법원이 언론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재판을 걸고 있다. 법원은 기준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데 당하고 있어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언론사에 어느 정도 보상을 하라고 할 것인지 이런 측면에서 봐야 한다. 판례가 발전하는 것도 피해자들의 피해를 무시할 수 없어서 책임을 야기한 쪽에 일정부분 부담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결국 법원이 언론을 통제하려는 것은 아니다. 보도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범죄관련 보도 중 문제가 되는 것은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다.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적다. 법원에서는 이를 구제하기 위해 일정 부분 언론사에 보상을 하라는 것이다. 법원은 양 당사자를 비교형량하고 어느 쪽을 보호할지 생각하다 보니 반대 당사자가 조금 고생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동근** : 흔히 언론을 제4부라고 한다. 언론의 역할에는 사법부 이상의 역할이 있다. 같은 사건 보도라도 판사가 보는 시각이 있고, 기자가 보는 뉴스 가치가 있다. 기존의 법질서에는 어긋나지만 공론장을 확대해서 기존의 법을 바꾸는 역할을 언론이 하기도

한다. 어린이 유괴살해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현장 검증을 할 경우, 실정법에 따르면 얼굴을 공개하면 안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서 계속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면 언론에서 그런 파렴치범의 얼굴은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을 모아 법을 바꿀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오종연**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심리에 피신청인 대리인으로 차장이나 담당 기자를 보내기도 한다. 그런데 한 번만 갔다 오면 안 가려고 한다. 중재부장들이 심리를 진행하면서 형사재판을 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불쾌한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좀 더 부드러운 진행을 바란다.

**성낙송(발제자,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 법원과 언론은 협력하는 관계로 가야한다. 진실이 뭔지 밝히는 데 협조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오늘 토론이 좋은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해석적 보도의 문제는 어떤 한계를 설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개인적으로 해석적 보도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싶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한 마디로 말할 수 없다. 해석보도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적 영역과 관련해 재산상 손해의 산정은 일반 사건보다 증액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싶다. 일반 사기업의 경우 보도가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언론계의 조사확인 의무와 관련해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셨는데, 조사확인 의무는 반드시 이행을 해야 한다. 범죄보도를 할 때 보도를 왜 해야 하는 것인가, 누구를 위한 보도인가는 언론계가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판례가 언론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싶다. 가이드 라인을 가지고 보도하자는 쪽으로 하나하나 기준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종전에 관행으로 치부되던 영역에서 기준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다.

**안영률(법원 언론법 분야 연구회 회장)** : 공동 주최자

로 참여한 데 감사한다. 같이 참석하여 보니 분위기가 열을 띠어가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2000년부터 언론사건 재판을 해왔다. 그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사건보도의 질은 엄청난 발전을 보였고, 사건 수는 크게 줄었다. 언론관계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린다.

**권 성(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 토론회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특별히 발제를 해주신 이재진 교수님, 성낙송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님, 사회를 맡아주신 권혁남 교수님께도 감사드린다. 발표의 내용이 치밀하고 분석이 탁월한 논문이라 생각한다.

토론과 직접관계는 없으나 좋은 말씀을 몇 분이 해주셨다. 지방에 있는 작은 도시의 마이너 언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얘기해 주셨다. 적절한 지적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분쟁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금년에는 10월 말까지 76회의 교육이 있었다. 그 중에 25회가 언론사를 상대로 한 교육이다. 그러나 지방 소도시의 마이너 언론사에 대한 교육을 따로 하지는 않았다. 앞으로는 그런 곳을 배려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금년에 신청사건이 줄고 있다. 이유가 뭔가 생각해 봤는데 오늘 토론회에서 이유를 알았다. 언론사 자체에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다.

오풍연 대기자께서 부드러운 진행을 말씀하셨다. 중재위원회에 와서 시간이 나는 대로 조정심리에 참여하고 있다. 조정에 참여하면서 많이 놀랐다. 조정심리에 들어가 보니 중재위원들이 참을성 있게 당사자 얘기를 다 듣고 설명을 해주고 있었다. 다른 중재부도 마찬가지로 민주적이고 친절한 태도로 조정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오늘 토론을 보며 떠오른 생각이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을 할 때 포털 사이트 댓글의 위력을 느낀 적이 있다. 탄핵 재판을 할 때 변론과정에서 청구

인 쪽 대리인에게 석명을 구한 적이 있다. 며칠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엄청난 공격이 들어왔다. 대부분이 원색적 욕설과 위협이었다. 2주일 정도 계속되다 어느 순간 중단이 됐다. 그 때 댓글의 파괴력, 영향력을 방치해서는 안 되지 않나 생각했다. 사법부의 독립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하나의 근간인데 사법부의 재판에 대해 비난한다면 곤란하지 않나 생각했다.

포털의 뉴스서비스에 대한 접근 방법이 먼저 언론의 개념을 확정짓는 데에서 시작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반대로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피해구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느냐 하는 쪽에서 시작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인터넷 댓글을 통한 인격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된 이유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봤다. 첫 번째는 정치적인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 우리 언론이 그동안 군사 통치에 대한 저항, 민주화를 위한 몸부림 이런 측면에서 엄청난 기여를 했고 공을 세웠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런 과정에서 언론의 논조가 과격하고 때로는 균형을 잃은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정부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심한 표현과 절제 잃은 행동을 하는 것도 우리가 많이 보았다. 이런 것이 일반국민에게는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행동할 때는 저런 것도 다 용납이 되는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한다. 일반 시민들의 댓글을 보면 모욕적이고 균형을 잃은 언사를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군사 통치도 끝났고, 민주주의의 완성을 향해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으니 이제는 언론의 품위, 마찬가지로 인터넷 언론의 품위도 격상되어야 한다. 언론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일반 대중에 대한 교육에 대해 힘써 주시길 바란다.

두 번째로 헌법상의 기본권적 측면에서 이 문제를

보면, 이것은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의 상관관계에 있다. 알권리는 원칙적으로는 국가 권력에 대한 관계에서 주장되는 기본권이다. 국가권력이 아닌 개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국가에 요구하는 정도로 개인에 대한 알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용납되기 어렵다. 개인에게는 프라이버시가 있다. 이것을 지키고 보호받는 것도 중요한 기본권이다. 따라서 알권리를 국가권력과 동일한 정도의 강도로 일반 사인에 행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민주주의의 기본요소는 개인주의가 아닌가 한다. 개인이 가지는 인격, 명예 이런 것에 우리가 좀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 설사 내 종아리에서 털 한 오라기를 뽑아서 천하가 이로울 수 있다 하더라도 내가 싫으면 안 하겠다는 말이 있다. 이같이 예로부터 개인에 대한 문제에 대해 집착하는 사상이 있는 것처럼, 오늘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주의가 원칙으로 인정되는 사회에서 개인의 인격권 보호는 표현의 권리에 못지 않는 기본권이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유의해야 한다.

세 번째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면책의 법률을 따질 때 공인,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하게 되는데 공공의 이익을 따질 때 자칫하면 이상한 방향으로 잘못 흘러갈 수 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전체주의 정권, 독재정권은 항상 공공의 이익을 앞세웠

다. 그러나 현실의 경험에서 보면 자칫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이 남용될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가 실제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잘못 행사되는 것이 있지 않느냐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언론과의 관계에 있어서 윤리적 측면이 좀 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한다. 논어에 보면 道聽而塗說(도청이도설)은 德之棄也(덕지기야)라는 말이 있다. 길에서 들은 이야기를 길에서 흘리는 것은 덕에 반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일부 인터넷에서 보면 우리가 사적인 술자리에서 할 수 있는 농담, 험담, 잡담을 공개된 장소로 끌고 나오는 것과 비슷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 이것은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언론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을 언론과 똑같은 범주에서 생각하는 것은 언론에 대한 모독이라 생각한다.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언론의 기준을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이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오늘 토론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업무에 큰 참고가 될 것이다. 그리고 언론관계법 개정 작업에 의견 진술할 기회가 있으면 오늘 토론 내용을 적절히 반영하겠다. 또 법원의 판사님들에게도 재판할 때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다시 한번 세미나에 참석하여 좋은 의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린다. □